

제179회 영등포구의회
2013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3. 11. 26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47호로 2013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수강생의 학습효과 증대 및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 구현을 위해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합리적인 수강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징수규정 신설 - 별표 1

단 위	운 영 과 정	기 준 금 액	비 고
강 좌	10시간 이하 프로그램	50,000원 이하	○ 실습재료비, 교재비는 본인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○ 1인 1프로그램
	10시간 초과 프로그램	100,000원 이하	

나.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반환기준 및 수강료 면제사항 규정 - 별표 2,3

다. 「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 순화 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에 따라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평생학습관에 대한 수강료 등의 징수 기준 및 면제대상과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7조에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개발·운영하는 강좌에 대하여 수강료 등에 대한 기준 및 근거, 무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18조에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등의 면제대상 및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,
- 안 제19조에 납부된 수강료의 반환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.

-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-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및 면제규정을 두고 있고,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제3항에 “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”고 규정되어 있는 등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참 고 자 료

1

평생교육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